2023. 2. 20.(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2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관련 누리집	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담 당 자	강 현 주	2133-8685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송 미 정	2133-8681	
	가족다문화담당관	천 주 환	2133-868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10쪽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추진

- 🍩 ত 얼마 일반 ···엄마아빠의 집안일 부담 덜어 일·가정 양립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13.000가구에 총 6회 가사서비스(청소빨래설거지 등). 54억6천 투자
- 권역별 운영업체 모집…2.22.(수)~3.8.(수) 공고, 3.7.(화)~3.8.(수) 방문접수
- □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실제 엄마 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이 힘들다.", 영유아 가정은 "육아 때문에 개인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엄마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4억 6천만원을 투자한다.

□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3,000가구에 가구당 6회의 가사서비스(1회당 4시간, 단가 약 7만 원)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5개 전자치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 있는 서비스 운영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 22일(수)~3월 8일(수)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3월 7일(화)부터 3월 8일(수)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영리법인 등)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단,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등의 이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서비스 운영업체는 5개 권역별(▲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로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한다. 희망하는 권역을 1~3지망까지 신청서에 작성해서 서비스 운영계획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는 2,4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북권(강북구·성북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은 2,540명 지원 ▲서북권(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은 2,520명 지원 ▲서남권(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은 2,590명 지원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은 2,930명을 지원한다.
□ 사업 선정은 1차로 현장평가 및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복지, 여성, 행정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안전관리 등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 □ 선정된 운영업체는 향후 시와 협력해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선정, 가사돌보미 매칭, 가사서비스 제공,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운영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시는 사업 시행 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신청 서식(공고문, 제안서 등 각 1부)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서울특별시 가족다문화담당관 (서울시청 9층)에 방문 및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 당관(☎2133-8685)로 문의하면 된다.
-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힘든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역량있는 업체들이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붙임: 1.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관련 사진
 - 2.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3-000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업체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운영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3. 2. 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o 사업대상: 서울거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ㅇ 지원규모: 약 13,000가구 지원
- o 지원횟수: 1가구당 6회(1회당 4시간, 평균단가 약 7만원)
 - ※ 1회 서비스 4시간 內 30분 휴게시간 포함 / 단가(안) : 평일 68,000원, 주말 72,000원
-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지격을 요하는 서비스
- o 사 업 비 : 5,460백만원 (시 50%, 구 50%)
 - 실제 서비스 제공내역 정산에 따라 예산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 (정산 시까지)

2. 사업자 수행 과업

- ㅇ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자 선정 기준에 따른 이용자 선정
- ㅇ (선정된) 이용자 대상 통보(메시지 발송) 및 가사돌보미 매칭
- ㅇ 권역별 가사서비스 제공 및 가사서비스 모니터링
- ㅇ 가사돌보미 모집. 교육. 배치 및 근태. 안전관리
- ㅇ 사고 및 안전관련 손해배상 등 보험가입
- ㅇ 권역별 서비스 실적관리, 비용정산 및 청구, 가사돌보미 급여 지급
- ㅇ 권역별 서비스 민원응대 위한 콜센터 운영
- ㅇ 가사서비스 지원관리시스템 사용 및 시스템에 따른 서비스 지원 및 정산처리
 - 가사서비스 신청 접수, 이용자 선정, 알림메시지 발송, 정산처리 가능한 시스템 별도 구축 예정('23. 6월중)
- ㅇ 가사서비스(1가구당 6회) 제공 완료 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ㅇ 본 사업의 사업수행 실적보고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ㅇ 시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자치구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정산처리
- ㅇ 기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가 협의한 사항 등

3. 선정개요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31.(정산시까지)

ㅇ 선정규모 : 5개 업체 이내 ※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안)

(단위:천원)

연번	권역	소관 자치구	바우처 지원액	지원규모
			5,460,000	13,000명
1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016,400	2,420명
2	동북권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1,066,800	2,540명
3	서북권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1,058,400	2,520명
4	서남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087,800	2,590명
5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230,600	2,930명

- o 사업내용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자 선정 및 매칭 통보, 가사서비스 제공, 서비스 응대 및 콜센터 운영 등
- o 선정방법 : 서류 수행실적 등 현장평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 선정
- 4. 모집공고 ※ 컨소시엄 가능,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자격 갖출 것
 - ㅇ 공고기간: '23, 2, 22,(수) ~ 3, 8,(수) / 15일간
 -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신청자격 : <u>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가사서비를 제공</u>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업체
 - ① 정부 또는 지자체에 허가,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②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임의단체
 - ③ 기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법인 또는 기업

▶ 컨소시엄(또는 협업) 구성 시 주관기관(대표기관)의 역할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주관 기관은 컨소시엄(또는 협업) 기관 구성, 공모 응찰, 수행기관(협업 참여기관 포함)의 역할 및 사업비 배분, 보조금 총괄관리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함
-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 부적격 단체

- ①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 ② 순수 종교활동 단체,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로 대표자 및 관리자가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③ 보조금 횡령 등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 ④ 그 밖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3. 3. 7.(화) 10:00 ~ '23. 3. 8.(수) 17:00까지

ㅇ 접수장소 : 서울시청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ㅇ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 ② 단체 또는 법인(기업) 소개서 1부.
- ③ 사업실행계획서(채용계획서 포함) 1부.
- ④ 서약서 1부.
- ⑤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 ⑥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 ⑦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증명서 1부.
- ⑧ 위임장(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 ⑨ 법인 등록증(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 ⑩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①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각 1부.
- ⑫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1부.
- ① 사업 제안서(PPT 발표용) 1부.
- ④ 제안서 외부저장장치(USB) 1개.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원본 1부 제출
- 심사자료 15부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 제안서 수록 USB 저장장치 1개 (별도 발표자료 포함)

6. 현장확인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방문 전 사전 통보

o 기 간: 2023. 3. 9.(목) ~ 3. 10.(금) 예정

ㅇ 방문대상 : 사업제안서 제출업체

ㅇ 확인내용 : 주사무소 확인, 제안내용 확인 등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o 개최일시: 2023. 3. 15.(수) 14:00 예정

ㅇ 장 소 : 추후 통보 예정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참조

8.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ㅇ 공개일시 : 2023. 3. 16.(목) 예정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협약 체결 시에는 선정단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내역을 소관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시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단독)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전상 우려 발생 시 보조사업자는 시-자치구와 협의하여 기간 변경, 사업 축소, 기타 참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ㅇ 지원신청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 단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o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입찰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단체는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단체는 보조금 관리지침 숙지 및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소 및 일정 별도 통보
- 기타 사업 참여 문의사항은 가족다문화담당관(강현주 주무관, 02-2133-8685)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